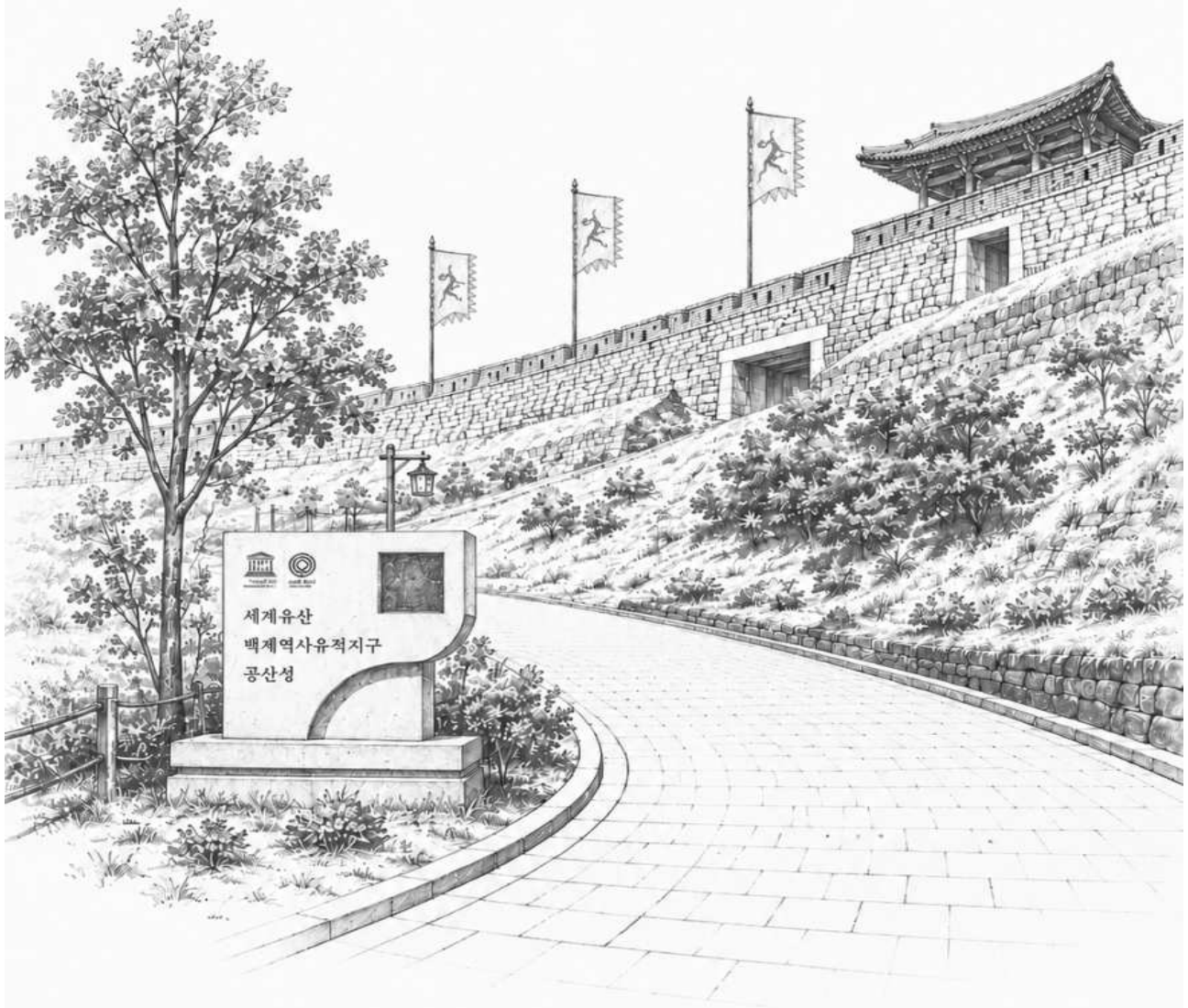


강한공주 행복한시민

공주시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992호 2026. 9. 1.(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산성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산성>



【훈 령】

제346호 공주시 공무원 근로자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3
---------------------------------------	---

【공 고】

제2026-2359호 사도개설허가 취소 전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11
제2026-2389호 공주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3
제2026-2401호 공주 정안 사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재열람·공고	29
제2026-2420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9

【고 시】

제2026-16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45
제2026-170호 공주 구례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경미한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경미한변경), 지형도면 고시	47
제2026-171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55
제2026-172호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57
제2026-173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58
제2026-174호 유구농공단지 조성사업(확장부지) 준공인가 공고	60

공주시 공무직 근로자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6년 9월 1일

공주시 훈령 제346호

공주시 공무직 근로자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 공무직 근로자등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를 “「지방공무원
법」 제7조”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별지14호의 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2조제2항제1호 중 “사직원을”을 “퇴직원을”로, “사직원에”를 “퇴직원에”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직원”을 각각 “퇴직원”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전단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3호”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3”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직의 정원표(제5조 관련)

1. 공무직 정원(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제외)

(단위: 명)

소속부서	계	단순노무원	행정사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비 고
계	222	54	88	11	69	
본 청	152	43	53	11	45	
기획감사실	1		1			
홍보미디어실	1		1			
자치행정과	2		2			
회계과	5	4	1			
세무과	1		1			
민원토지과	2		2			
경제과	2		2			
문화예술과	1		1			
관광과	5		5			
문화유산과	6	2	4			
휴양공원과	2		2			
환경보호과	1		1			
자원순환과	49	4			45	
교육체육과	1	1				
평생학습과	10		10			
복지정책과	8	2	6			
경로장애인과	8	6	2			
가족지원과	10		10			
교통과	3	2	1			
도로과	14	3		11		
상하수도과	20	19	1			
의회사무국	1		1			
직속기관	45	11	34			
농업기술센터	12	11	1			
보건소	33		33			
읍면동	24				24	
유구읍	4				4	
이인면	2				2	
탄천면	2				2	
계룡면	3				3	
반포면	3				3	
의당면	2				2	
정안면	2				2	
우성면	2				2	
사곡면	2				2	
신흥면	2				2	

2. 청원경찰의 정원(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단위: 명)

소속부서	계	경비 청원 경찰	청원 산림 보호 직원
계	9	8	1
본 청	9	8	1
회 계 과	2	2	
민원토지과	1	1	
문화유산과	2	2	
휴양공원과	1		1
교육체육과	1	1	
건 설 과	1	1	
상하수도과	1	1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42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3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 양	본인	20
입 영 휴 가	자녀 군입대 시	1

※ 입양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정원책정통보서

직 종	
근무내용	
책정인원	
그 밖에 사항	

「공주시 공무원 근로자등 관리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 책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 ○ 부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신분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 청 인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번호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 함

신청사유	[] 분실 [] 훼손 [] 기타 ()
분실사유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붙임	반명함판 사진 1매

「공주시 공무원직 근로자등 관리 규정」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분증 ([]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부서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휴직원			
소속		직위(급)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휴직사유			
휴직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년 월)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성명, 생년월일 표기		
위 본인은 「공주시 공무원 근로자등 관리 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휴직을 신청합니다. 붙임 : 증명서류 1부.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 공주시장 귀하			

공주시 공고 제 2026-2359호

사도개설허가 취소 전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1. 「사도법」제13조(허가의 취소)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허가취소 전 의견청취) 따라 사도개설허가 취소 전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2. 사도개설 허가 취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사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

공 주 시 장

가. 사도개설허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272-15 외 6필지

나. 사도개설허가 허가번호 및 허가자

- 허가번호 : 제2023-2호(2023.6.29)
- 허 가 자 : 공주시장

다. 사도개설허가 목적 : 단독주택 진출입로 개설

라. 허가 취소 사유 : 「사도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도개설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

마. 사도개설허가의 규모 : 도로개설 L=316m B=7.0m, A=5,584㎡

바. 수 허가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광림디에스 대표 이*진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

사. 공고기간 : 2026. 9. 1. ~ 2026. 9. 15.(15일간)

아. 문서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도로과(☎041-840-7822)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2026-2389호

「공주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제17조에서 위임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규칙의 목적,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안 제1조 ~ 제3조)
- ☐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및 적극행정위원회 지원 심의·의결(안 제4조 ~ 제5조)
- ☐ 변호사·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및 보수 등 적극행정 공무원의 지원(안 제6조 ~ 제8조)

- ☐ 지원 신청·절차 안내 및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안 제9조 ~ 제11조)
- ☐ 위원회 상정·심의, 결과 통보 및 집행(안 제12조 ~ 제13조)
- ☐ 선임비용 지원 후 자료 제출 및 보고 의무 부과(안 제14조 ~ 제15조)
- ☐ 적극행정 지원 취소 및 지원의 반환(안 제16조 ~ 제1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 ~ 2026. 9. 21.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기획감사실(의회법무규제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기획감사실 (우편번호 32552)
- 이메일 : ghghskawk123@korea.kr
- 전 화 : 041-840-2044 / FAX : 041-840-3705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공주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청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규제팀 (☎ 041-840-2044)

☐ 제출방법 ㄱ 우편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ㄴ FAX : 041-840-3705

공주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영 제2조제2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적극행정 보호관”이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주시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4조(적극행정 보호관)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 관계 확인
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사부서의 장 등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고 법률 등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적극행정 지원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한다.

③ 기관의 업무 특성상 심도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상담, 필요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은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공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 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변호사·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시장은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 변호인 선임비용 등 1,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고소·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 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변호사·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속 기관의 외부 자문 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위원회 의

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소속 기관의 외부 자문 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 출석 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 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사 등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9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 절차의 소명에 관해 제9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 등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 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은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 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

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 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보호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사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사 등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사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보호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 제17조(변호사 등 보수의 반환) ① 제16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 제17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 변호사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사 선임 지원
징계의결 요구개요	징계의결 요구	
	요구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사유		
구비서류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공주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 소송수행 지원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담당업무	성 명 :		
신청내용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건번호	고소·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사건개요				
구비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공주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 소송수행 지원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자		신청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사유	지원결정일	지원내용	징계결과	지원 취소 · 반환 등	비고
	소속	성명								

[별지 제4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자		신청일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사 건 개 요	지원결정일	지원내용	수사 및 소송결과	지원 취소 · 반환 등	비고
	소속	성명								

공주 정안 사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재열람·공고

공주시 공고 제2024-2488호(2024. 9. 4.)로 열람·공고한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산16-1번지 일원의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공 주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공주 정안 사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교통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산16-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952,259㎡(지구단위계획구역 941,031㎡, 도로 11,498㎡)
-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내용

2.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 공람기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공람장소 : 공주시 도시정책과, 정안면사무소, 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 의견제출기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의견제출방법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으로 서면 제출

3. 기타사항

- 관련도면 등은 게재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
-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도시정책과(☎041-840-7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1부.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안) 1부.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1. 사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결 정 일	비 고
				입안(안)	변 경	변경(안)		
A	사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정안면 사현리 산16-1번지 일원	921,722	증)19,309	941,301	-	

②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 입안(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921,722	-	921,722	100.0	
관리지역	소 계	261,103	증) 660,619	921,722	100.0	
	보전관리지역	1,623	감) 1,623	-	-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259,480	증) 662,242	921,722	100.0	
농림지역		660,619	감) 660,619	-	-	

■ 변경(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941,031	-	941,031	100.0	
관리지역	소 계	287,621	증) 653,791	941,031	100.0	
	보전관리지역	381	감) 381	-	-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287,240	증) 653,791	941,031	100.0	
농림지역		653,410	감) 653,410	-	-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최 결 정 일	비 고
				입안(안)	변 경	변경(안)		
A	사현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산16-1번지 일원	921,722	증)19,309	941,301	-	-

나.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안) 조서(변경)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입안(안)	변경	변경(안)		
합 계		921,722	증) 19309	941,031	100.00	-
체육 시설	소 계	342,383	감) 73,231	269,152	28.60	-
	그린	18,136	증) 569	18,705	1.99	-
	티	10,026	증) 557	10,583	1.12	-
	벙커	16,059	감) 7,785	8,274	0.88	-
	페어웨이	140,107	감) 58,371	81,736	8.69	-
	러프	157,226	감) 7,790	149,436	15.88	-
	P/G	829	감) 411	418	0.04	-
건축 시설 용지	소 계	12,308	감) 1,479	10,829	1.15	-
	클럽하우스	8,643	감) 1,180	7,463	0.79	-
	티하우스	448	감) 164	284	0.03	-
	관리동	3,217	감) 135	3,082	0.33	-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84,582	감) 8,990	75,592	8.03	-
	진입도로	2,844	감) 359	2,485	0.26	-
	주차장	14,406	감) 252	10,154	1.08	-
	관리도로	33,196	감) 4,022	29,174	3.10	-
	묘포장	-	증) 2,091	2,091	0.22	-
	오수처리장	-	-	-	-	-
	배수지	-	-	-	-	-
	LAKE(저류지)	34,136	감) 2,448	31,688	3.37	-
녹지 용지	소 계	482,449	증) 103,009	585,458	62.22	-
	원지형보전녹지	236,968	증) 93,422	330,390	35.11	-
	조성녹지	245,481	증) 9,587	255,068	27.11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입안(안)	소로	1	A	10.5	국지 도로	542	사현리 254-6도	골프장 입구	일반 도로	-	-	-
변경(안)	소로	1	A	10.5	국지 도로	580	사현리 254-6도	골프장 입구	일반 도로	-	-	사면포함시 17~30m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입안(안)	-	소로1-A	• 노선 신설 - B=10.5m, L=542m	• 기존 소하천 제방도로(우안)를 폭원 확장하여 골프장 진입도로로 활용하며,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변경(안)	-	소로1-A	• 노선 신설 - B=10.5m, L=580m	• 기존 소하천 제방도로(우안)를 폭원 확장하여 골프장 진입도로로 활용하며,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변경)

■ 입안(안)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A	1BL	921,722	①	684,754	체육시설용지
			②	236,968	원형보전녹지

■ 변경(안)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A	1BL	941,031	①	610,641	체육시설용지
			②	330,390	원형보전녹지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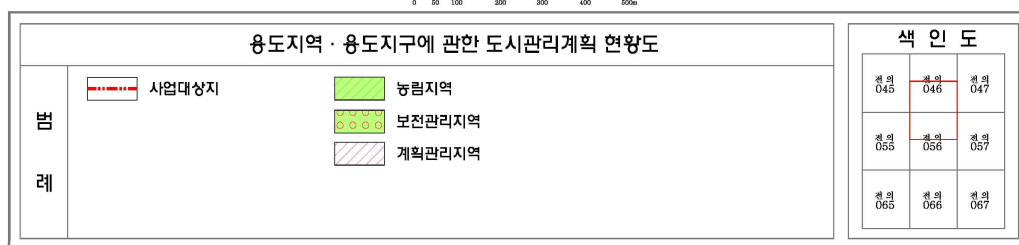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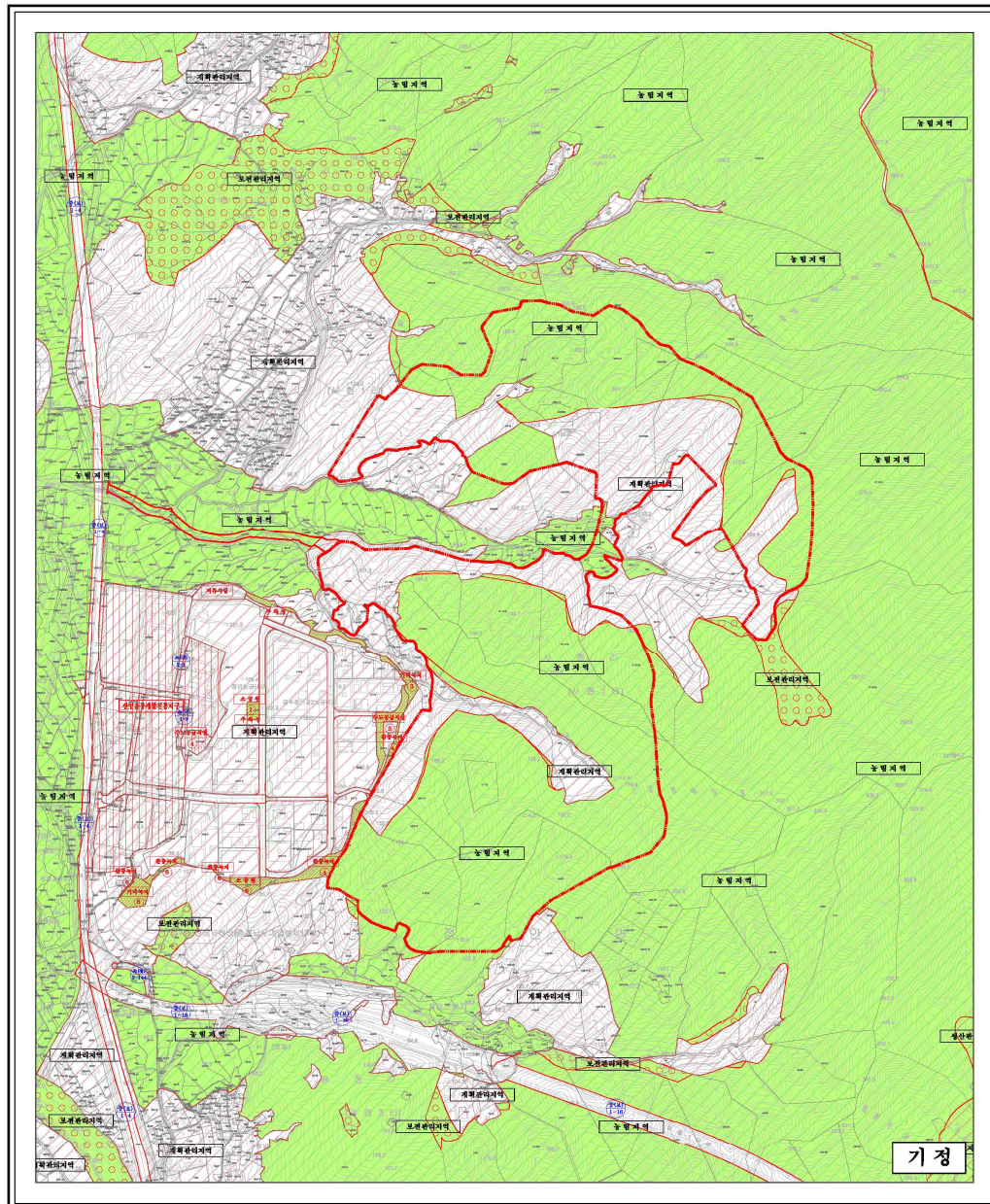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1-1	용도	허용 용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체육시설업을 위한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 나, 다, 마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아, 자, 파, 러목(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의한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의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가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에 의한 발전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 의한 관광 휴게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 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높이는 20m 이하(경사도가 15도 이하이고, 구역 외부의 국도 또는 지방도에서 보이지 않은 경우 30m 이하)	

[붙임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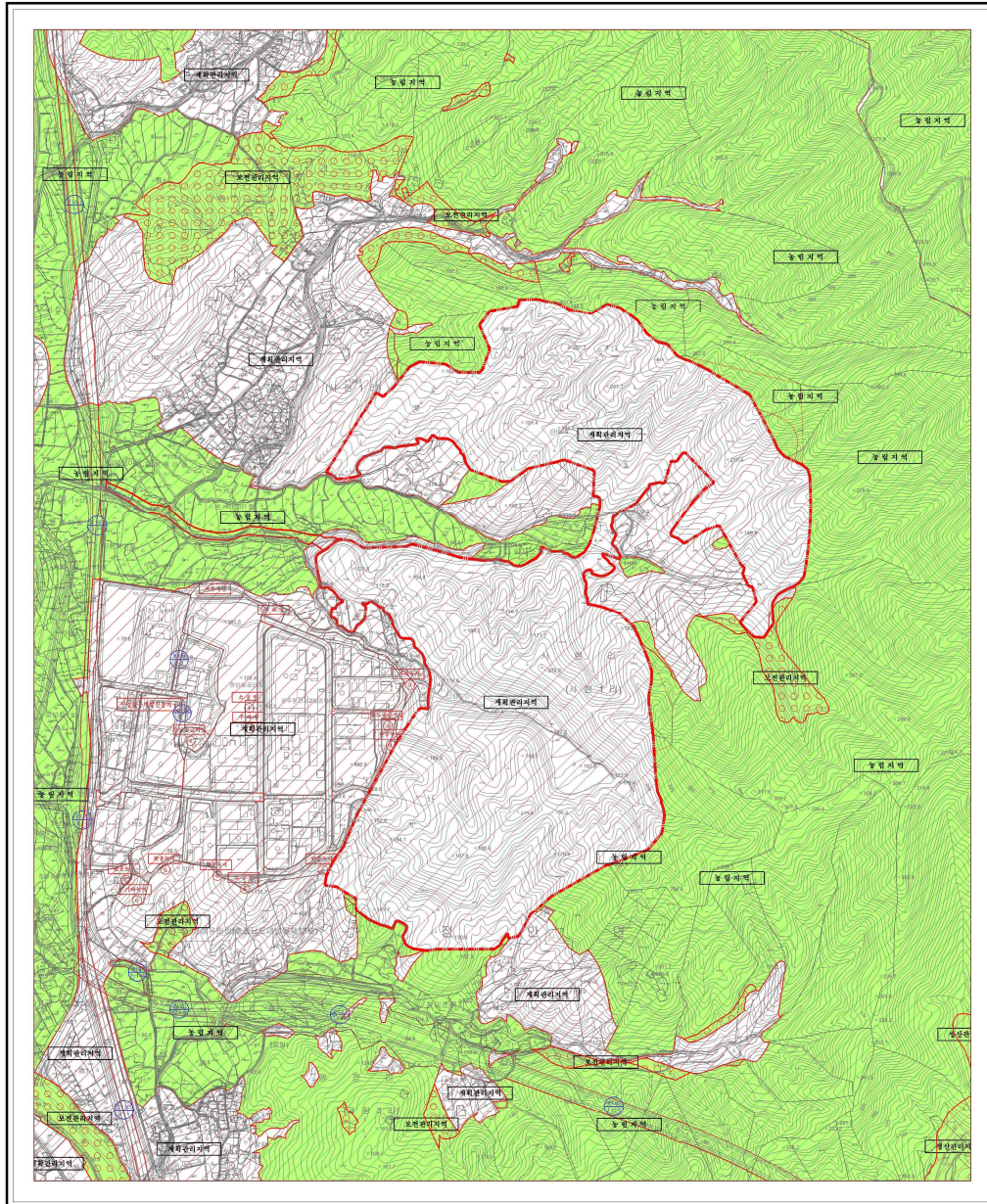
1) 기정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도로) 결정(변경)(안)



2) 변경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도로) 결정(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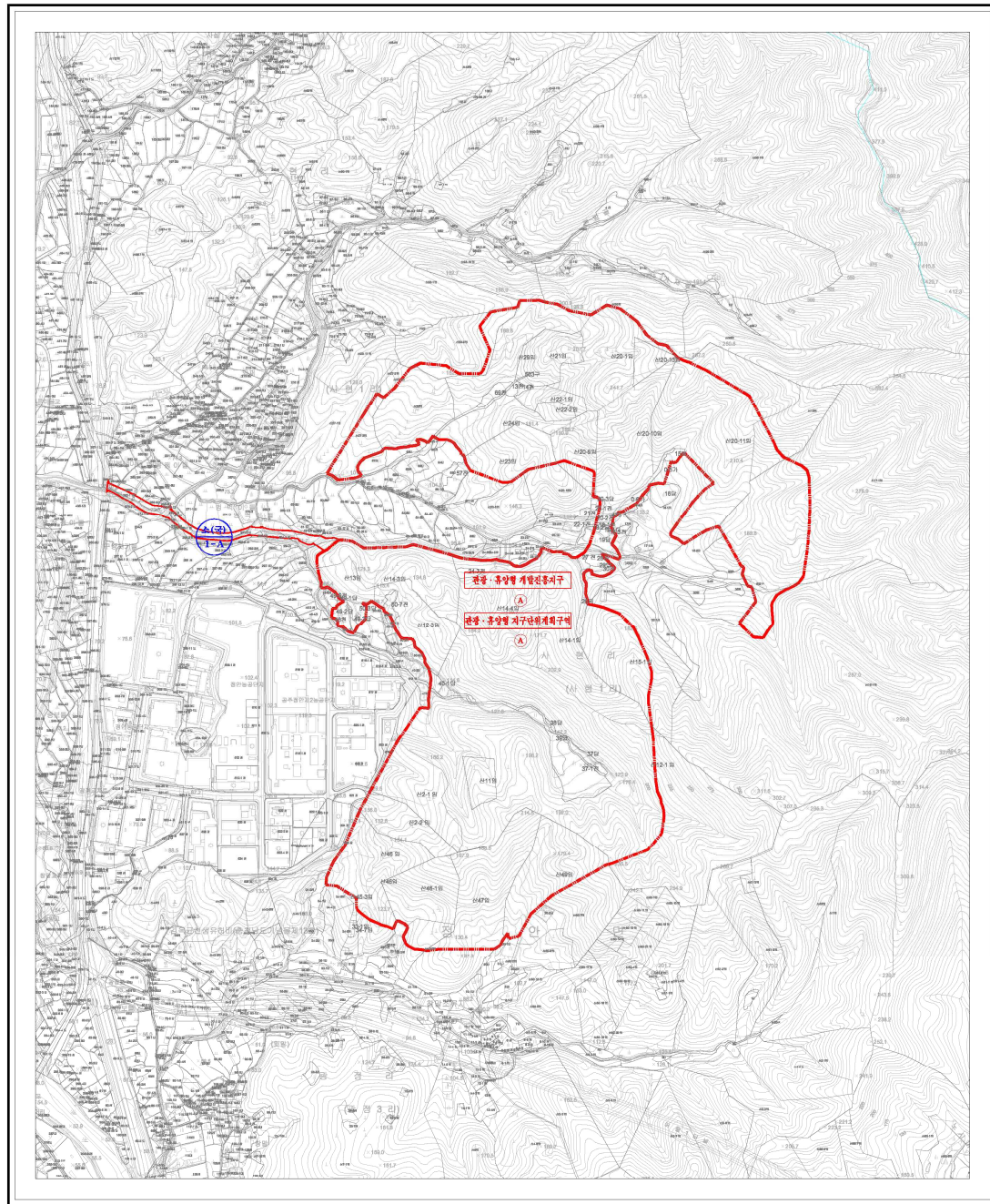


축척 1 : 5,000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색인도		
표 례	지구단위계획구역	농림지역	권역 045	권역 046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전관리지역	권역 055	권역 056
	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	권역 065	권역 066
			권역 047	권역 057
			권역 067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도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축척 1 : 5,000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도

범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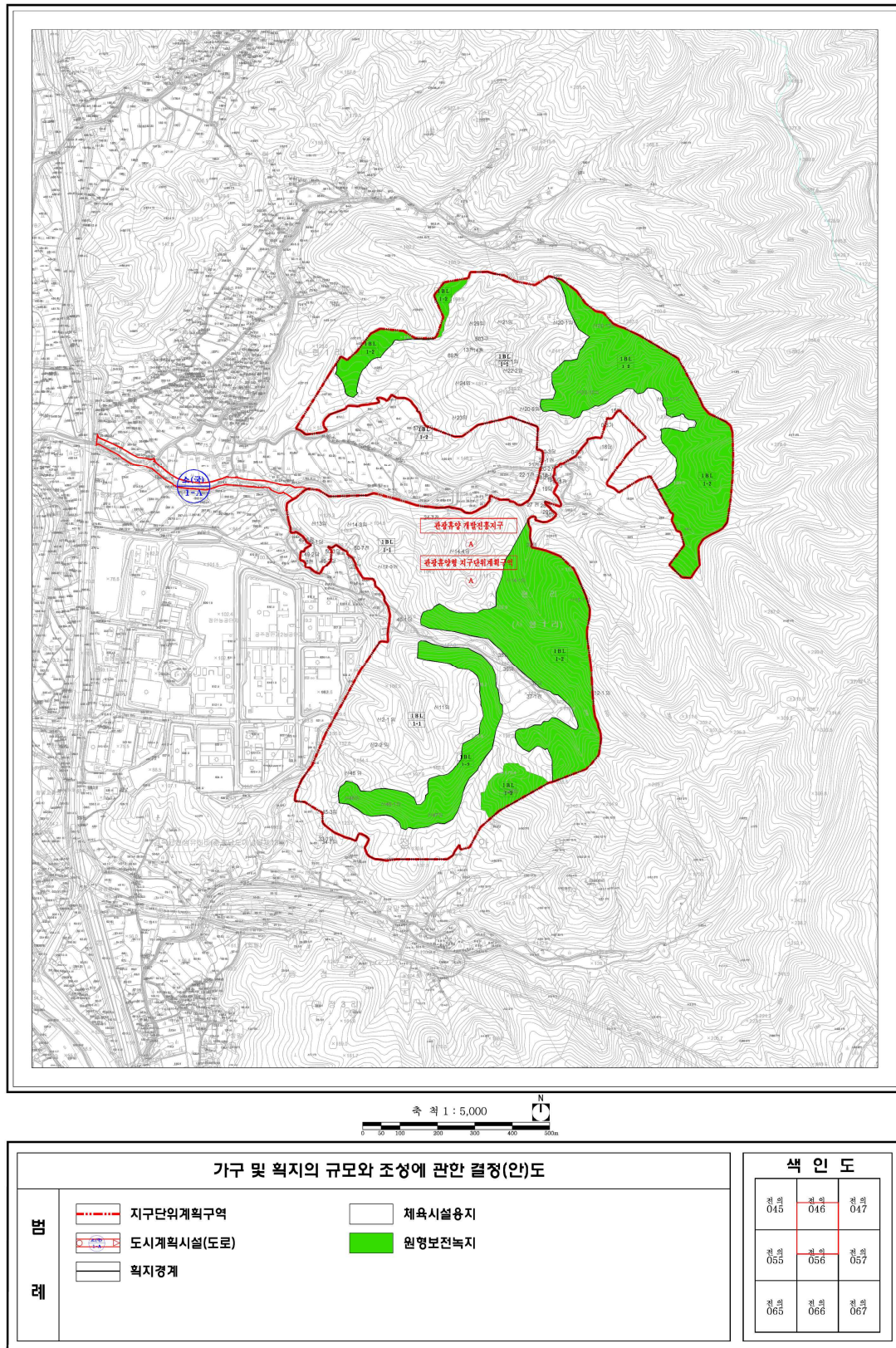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 + 도시계획시설(도로)

색 인 도

전 의 045	전 의 046	전 의 047
전 의 055	전 의 056	전 의 057
전 의 065	전 의 066	전 의 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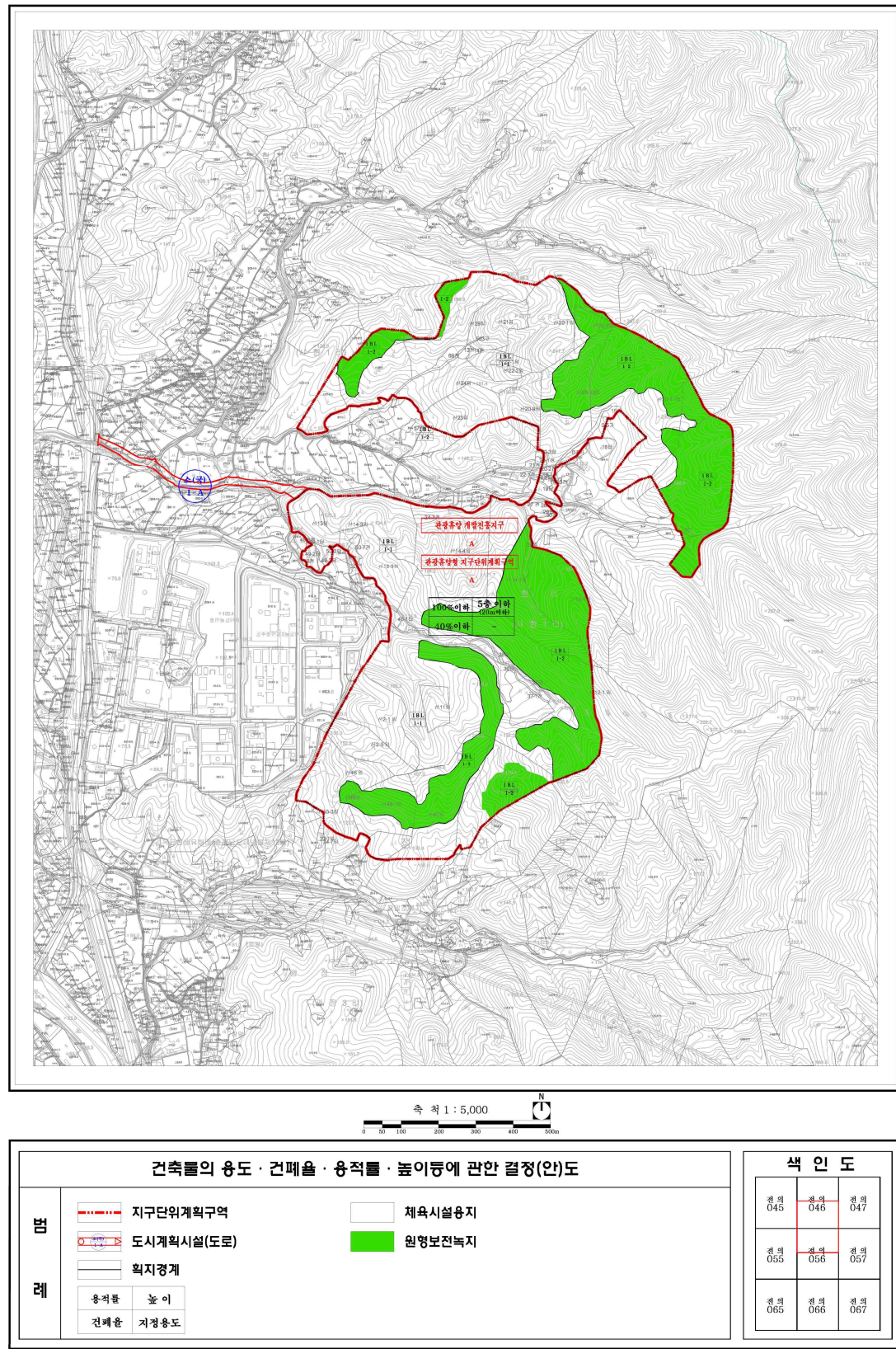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도로) 결정(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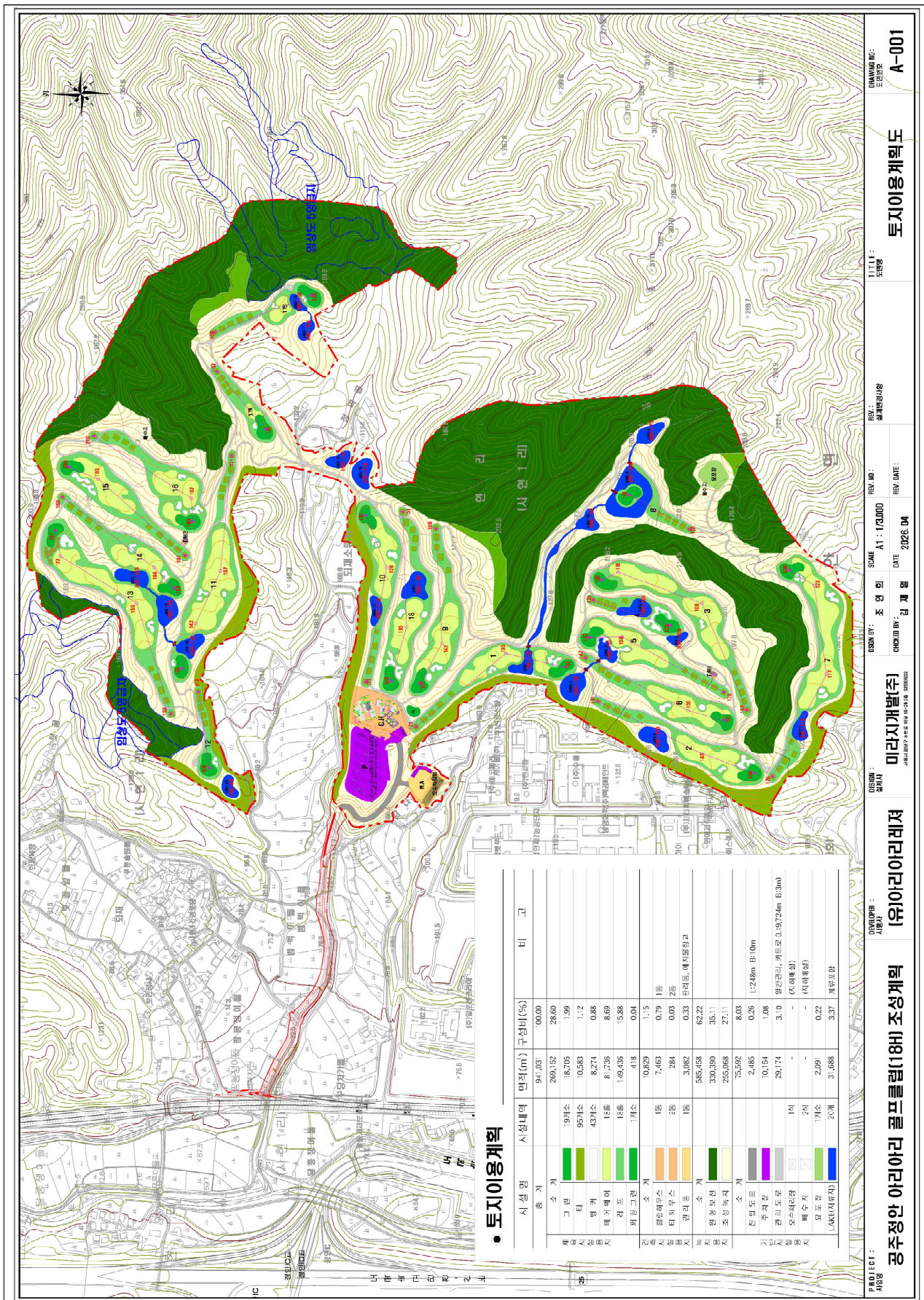


라.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도로) 결정(변경)(안)



마. 토지이용계획(안)도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공 주 시 장

1. 개정이유

- 현재 월송1통 관할구역 내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일원을 관할하는 월송9통 신설(1개통 8개반)

2. 주요내용

- 월송9(1개통 8개반) 신설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366세대 2026년 11월 입주예정

읍면동	행정통	변 경(안)		
		반명	가구	관할구역
월송동	월송9통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1반	31	무령로 580-12,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101동 201호 ~ 1501호, 202호 ~ 1802호
		2반	60	무령로 580-12,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102동 101호 ~ 2003호
		3반	60	무령로 580-12,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103동 101호 ~ 2003호
		4반	59	무령로 580-12,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104동 101호 ~ 2002호, 203호 ~ 2003호
		5반	32	무령로 580-12,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105동 101호 ~ 1301호, 202호 ~ 2002호
		6반	40	무령로 580-12,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106동 101호 ~ 2002호
		7반	58	무령로 580-12,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107동 101호 ~ 2003호
		8반	26	무령로 580-12,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108동 101호 ~ 1302호

○ 조정내역

신 설			구 역 도
통	반	가구	
계	8개반	366가구	
월송9통	1	31가구	
	2	60가구	
	3	60가구	
	4	59가구	
	5	32가구	
	6	40가구	
	7	58가구	
	8	26가구	

3. 입법예고기간 : 2026. 9. 1. ~ 2026. 9. 22. (21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자치행정과(시정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 연 락 처 : 041-840-2207 / FAX: 041-840-2307 / 전자우편 : LNH880224@korea.kr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통·반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자치행정과 시정팀 (☎ 041-840-2207)

☐ 제출방법 ㄱ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ㄴ FAX : 041-840-2307. 전자우편 : LNH880224@korea.kr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월송동의 행정리.통명란 중 월송8통 다음에 월송9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월송동	월송9통	1반	무령로 580-12,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101동 201호 ~ 1501호, 202호 ~ 1802호
		2반	무령로 580-12,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102동 101호 ~ 2003호
		3반	무령로 580-12,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103동 101호 ~ 2003호
		4반	무령로 580-12,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104동 101호 ~ 2002호, 203호 ~ 2003호
		5반	무령로 580-12,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105동 101호 ~ 1301호, 202호 ~ 2002호
		6반	무령로 580-12,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106동 101호 ~ 2002호
		7반	무령로 580-12,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107동 101호 ~ 2003호
		8반	무령로 580-12,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108동 101호 ~ 1302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u>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u> (제4조 관련)				[별표] <u>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u> (제4조 관련)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마을 또는 번지, 도로명주소)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마을 또는 번지, 도로명주소)
월송동	월송1통 ~ 월송8통	(생략)	(생략)	월송동	월송1통 ~ 월송8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월송9통	1반	무령로 580-12,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101동 201호 ~ 1501호, 202호 ~ 1802호
		<신설>	<신설>			2반	무령로 580-12,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102동 101호 ~ 2003호
		<신설>	<신설>			3반	무령로 580-12,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103동 101호 ~ 2003호
		<신설>	<신설>			4반	무령로 580-12,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104동 101호 ~ 2002호, 203호 ~ 2003호
		<신설>	<신설>			5반	무령로 580-12,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105동 101호 ~ 1301호, 202호 ~ 2002호
		<신설>	<신설>			6반	무령로 580-12,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106동 101호 ~ 2002호
		<신설>	<신설>			7반	무령로 580-12,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107동 101호 ~ 2003호
		<신설>	<신설>			8반	무령로 580-12,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108동 101호 ~ 130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 주소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4일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무령로 580-12 외 3건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4건)				
변경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0건)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0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041-840-825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 2026. 08. 14. >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공주 구례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경미한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경미한변경), 지형도면 고시

공주시 고시 제2026-93호(2026. 05. 04.)로 고시된 공주시 금홍동 321번지 일원
공주 구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분할측량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일

공 주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 공주 구례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공주시 금홍동 321번지 일원
- 면 적 : (당초) 39,195㎡
(변경) 39,153㎡
- 변경사유 : 분할측량 결과반영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공주 도심 북측에 입지하고 있는 대상지는 공주IC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시도36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세종시 및 인근지역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기성시가지 및 신규 개발지와 연접해있어 개발압력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지역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됨
- 이에 따라,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적인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보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시행(예정)자 : 주식회사 리채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45, 에이동 902,903호(연제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공사완료 공고일
-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붙임1 참조)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계		39,195	39,153	100.0	100.0	691세대 / 1,603인
주거 용지	소계	33,194	33,158	84.7	84.7	
	공동주택용지	33,194	33,158	84.7	84.7	691세대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계	6,001	5,995	15.3	15.3	
	도로	820	815	2.1	2.1	
	주차장	330	331	0.8	0.8	1개소
	공원	4,851	4,849	12.4	12.4	1개소

나. 기반시설계획 (변경)

- 교통시설
 - 도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	173	820	1	173	820	-	-	-	-	-	-
	변경	1	173	815	1	173	815						
중로	기정	1	173	820	1	173	820	-	-	-	-	-	-
	변경	1	173	815	1	173	815						

※ 면적 및 연장은 중로 1-23호선 전체 구역중 도시개발구역 내 부분만 기재

- 주차장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 고
			당초	변경	변경 후	
계			330	증) 1	331	
신설	주차장	공주시 금홍동 321번지 일원	330	증) 1	331	

○ 공간시설

- 공원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 고
			당초	변경	변경 후	
계			4,851	감) 2	4,849	
신설	공원	공주시 금홍동 321번지 일원	4,851	감) 2	4,849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 - 해당없음

7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2)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설치계획	시행주체	비고
도로	중로1-23호선	B=20~28m, L=298m	사업시행자	

※ 구역 외 기반시설 설치규모는 향후 인허가 진행시 변경될 수 있음

9.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 고시일 다음날부터 14일간(법정 국·공휴일 제외)
- 열람장소 : 공주시 도시정책과(☎ 041-840-7674)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가. 도시개발구역 (변경)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	공주 구례지구 도시개발구역	공주시 금홍동 321번지 일원	39,195	감) 42	39,153	-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변경	-	공주시 금홍동 321번지 일원	39,153	• 분할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면적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	공주 구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주시 금홍동 321번지 일원	39,195	감) 42	39,153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변경	-	공주시 금홍동 321번지 일원	39,153	• 분할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면적 변경

12. 기타사항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도 (S=1:1,000) : 게재생략

나. 도시개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S=1:1,000) : 게재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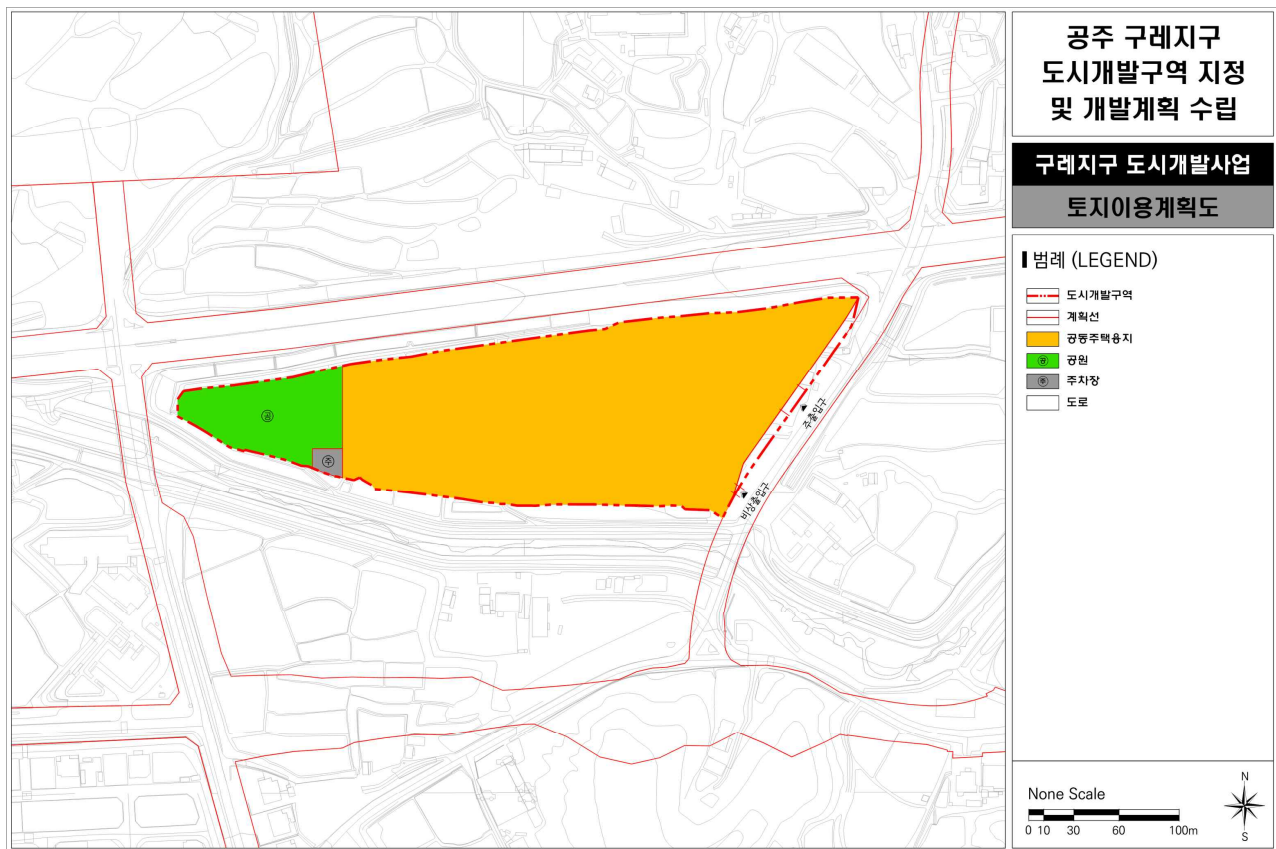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S=1:1,000) : 게재생략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S=1:1,000) : 게재생략

마.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바.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주시 도시정책과(☎ 041-840-7674)에 비치함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계		39,195	39,153	100.0	100.0	
주거 용지	소계	33,194	33,158	84.7	84.7	
	공동주택용지	33,194	33,158	84.7	84.7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계	6,001	5,995	15.3	15.3	
	도로	820	815	2.1	2.1	
	주차장	330	331	0.8	0.8	
	공원	4,851	4,849	12.4	12.4	



붙임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

토지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토지 면적 (㎡)	전체 토지 중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계 (34필지)				39,153	39,153			
1	금홍동	163	답	378	378	충청남도 공주시 일신역길	장*애 외 4인	
2	금홍동	164	답	1,137	1,137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척로	박*진 외 1인	
3	금홍동	165-2	답	184	184	세종특별자치시 다정중앙로	박*우	
4	금홍동	166-3	답	413	413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이*옥	
5	금홍동	171	답	846	846		국(기획재정부)	
6	금홍동	171-1	답	22	22		국(기획재정부)	
7	금홍동	172	답	1,907	1,907	충청남도 공주시 일신역길	장*애 외 4인	
8	금홍동	172-1	답	6	6	충청남도 공주시 일신역길	장*애 외 4인	
9	금홍동	173	답	3,678	3,678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리	전*임	
10	금홍동	174-1	대	796	796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로	유*근 외 5인	
11	금홍동	174-2	답	1,468	1,468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김*래	
12	금홍동	174-3	답	2,097	2,09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이*주	
13	금홍동	174-4	답	91	9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이*우	
14	금홍동	174-9	답	1,750	1,750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로	유*근 외 5인	
15	금홍동	174-13	답	3	3		공주시	
16	금홍동	320	답	570	570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노*은	
17	금홍동	320-1	답	708	708	충청남도 공주시 동현길	김*경	
18	금홍동	321	답	3,514	3,514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덕수***** 종회	
19	금홍동	322	답	1,380	1,380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이*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토지 면적 (㎡)	전체 토지 중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20	금홍동	323	답	3,658	3,658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임*숙 외 3인	
21	금홍동	324	답	2,259	2,25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이*우 외 2인	
22	금홍동	325	답	972	97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이*우 외 2인	
23	금홍동	326	답	3,531	3,53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이*주	
24	금홍동	327	답	661	661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조*봉	
25	금홍동	327-1	답	1,613	1,613	충청남도 공주시 교동	오*찬	
26	금홍동	328	답	1,405	1,405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이*숙	
27	금홍동	329	답	1,201	1,20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이*주	
28	금홍동	330	답	2,023	2,023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여*현	
29	금홍동	330-2	답	32	32		국(기획재정부)	
30	금홍동	331-2	답	11	11		국(기획재정부)	
31	금홍동	331-7	답	505	505		국(기획재정부)	
32	금홍동	331-13	답	105	105		국(기획재정부)	
33	금홍동	542-14 3	천	90	90		국(국토교통부)	
34	금홍동	573-3	도	139	139		국(국토교통부)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 주소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소학동 소학동길 63-44 외 9건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8건)				
변경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0건)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041-840-825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 2026. 08. 21. >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지방세법」 제112조 및 「공주시 시세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일

공 주 시 장

- 다 음 -

1. 적용대상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공주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1. 고시면적 : 61,243,532㎡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계		61,907,792.0	61,243,532.0	100.0	감) 664,260.0㎡
도 시 지 역	주거지역	6,780,012.0	6,780,012.0	11.1	○ 증감사유 : 『세종(구 가산) 일반산업 단지 지정 해제 및 실시계획 취소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26-148호, '26. 3. 30.) 관련 용도지역(비도시) 환원 면적 반영
	상업지역	569,587.0	569,587.0	0.9	
	공업지역	4,199,827.0	3,535,567.0	5.8	
	녹지지역	50,358,366.0	50,358,366.0	82.2	

3. 기타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도시지역에 대한 상세내용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 고시내용에 대한 문의 :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19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6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 주소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부내로 721 외 3건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4건)				
변경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0건)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0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041-840-825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 2026. 08. 28. >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유구농공단지 조성사업(확장부지) 준공인가 공고

1. 공주시 공고 제2012-440호(2012.03.12.)로 준공인가 공고되고, 충청남도 고시 제2021-458호(2021.12.10.), 공주시 고시 제2022-65호(2022.04.01.), 제2022-217호(2022.12.28.), 제2023-99호(2023.06.15.), 제2023-200호(2023.12.15.), 충청남도 고시 제2024-15호(2024.01.10.), 공주시 고시 제2024-67호(2024.05.01.), 제2023-234호(2024.12.16.), 제2025-168호(2025.09.23.), 제2025-236호(2025.12.24.), 제2026-55호(2026.03.23.)로 농공단지계획 등 변경 승인 고시된 유구농공단지 확장부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1일

공주시장

1. 사업의 명칭 : 유구농공단지(확장)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웅진식품(주) 대표 이지호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58번지 일원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58번지 일원
 - 면적 : 277,975.7m²(기존 준공부지 : 227,961.3m², 금회 확장부지 : 50,014.4m²)
 - ※ 금회 준공은 유구농공단지 확장부지 내 용지 및 시설물에 한함
4. 준공인가 연월일 : 2026년 09월 01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m²)			구성비 (%)	분양여부		관리처분계획
	합 계	준공부지	확장부지 (금회 준공)		유상	무상	
합계	277,975.7	227,961.3	50,014.4	100.0	-	-	-
산업시설용지	184,298.0	152,261.1	32,036.9	66.3	○	-	수요자 자체관리
지원시설용지	3,867.4	3,867.4	-	1.4	○	-	수요자 자체관리
공공시설용지	89,810.3	71,832.8	17,977.5	32.3	-	-	-
도로	21,788.4	18,169.1	3,619.3	7.5	-	○	공주시장 관리
보행자도로	795.9	795.9	-	0.3	○	-	수요자 자체관리
주차장	2,668.9	1,379.9	1,289.0	1.0	-	○	공주시장 관리 (일부 수요자 자체관리)
배수지	587.9	587.9	-	0.2	-	○	공주시장 관리
체육시설	1,149.0	1,149.0	-	0.4	○	-	수요자 자체관리
공원	597.4	597.4	-	0.2	-	○	공주시장 관리
녹지	62,222.8	49,153.6	13,069.2	22.7	○	-	수요자 자체관리



선 람	기관위원장

회 람						

발행 : 공주시 편집 : 홍보미디어실 ☎ 041-840-8464
 우)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